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이하 "방호선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이하 "자율안전규격" 이라 한다.) 이외의 재료로 만든 낙하물 방호선반은 가설기자재 자율안전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리적, 기계적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낙하물" 이라 함은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 (나) "방호선반"이라 함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법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가설기자재 자율안전규격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